

주요 공지사항

1. 연구소 기술용역계약 체결 시에는 본 전자계약시스템이 아닌 수기 계약 또는 아래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투자기획팀의 계약서/정보보호서약서 내용 정합성, 비표준계약서 법무 검토결과, 집행품의 검토결과 확인 필요

업체선정 방식	국내업체	해외업체	비고
ROMS	ROMS 內 전자계약	문서계약	- 국가별 전자서명법이 상이하여 해외업체 전자계약은 법적장치 검토 후 적용여부 결정 예정 - 오프라인 업체선정의 경우에도 ROMS 內 전자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기능 개발 예정 - 문서계약 인감 날인은 연)투자기획팀에서 주관 → 업체 인감날인 완료된 계약서 원본은 연)투자기획팀 ROMS 담당자에게 전달
오프라인 업체선정 (NGV자문, SR건 등)	문서계약	문서계약	

* 오프라인 업체선정 : 기술용역 업무 효율화를 위해 유관부문과 사전협의를 통해 ROMS를 생략하고 품의 후 계약 진행하는 건

2. 본 시스템을 통한 전자 날인은 '사용인감'을 사용합니다. 법인 인감은 기존 시스템 그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인감신청 시스템 : 오토웨이 - 결재 - 결재문서작성 - 전체 - 법인인감날인신청서 클릭

3. 전자계약은 해외 업체와도 체결 가능하나 해당 국가에서 법적으로 전자계약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첨부의 전자계약 진행 가능 국가 리스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서 템플릿은 '준법경영지원시스템'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5. 본 시스템을 통하여 쌍방간 전자계약을 체결한 건은 수기 계약서와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쌍방 날인 완료 후 계약서 수정은 불가합니다.
(한 쪽은 수기날인, 한 쪽은 전자날인 X, 쌍방 모두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만 유효함)

6. 상대측 업체에서 본 전자계약을 위해 별도로 시스템 설치 등이 불필요하며,
당사 날인 후 전송 시 입력하신 상대업체 담당자 이메일에서 열람 및 날인이 가능합니다.(매뉴얼 참조)

[첨부] 전자계약 가능 국가리스트

- 전자계약은 해외 업체와도 체결 가능하나 해당 국가에서 법적으로 전자계약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아래의 65개국에서 전자계약을 법적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대륙	국가
아시아 (21)	대한민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타이완, 태국, 터키, 필리핀, 홍콩, UAE
유럽 (27)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코틀랜드,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미주 (11)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페루
아프리카 (3)	남아공, 이집트, 카메룬
오세아니아 (2)	호주, 뉴질랜드

- 상기 국가 이외의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위치한 업체와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기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법으로 전자계약을 인정하더라도, 쌍방 업체가 전자로 체결하는 경우에만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Case별 전자계약 예시

- ① HMC ↔ 미국 업체(법적 인정) : 유효 → 전자계약 진행
- ② HMC ↔ 몽골(법적 미인정) : 무효 → 수기계약 진행
- ③ HMC 전자계약 송부 → 미국 업체에서 해당 계약서 프린트 후 수기 날인 : 무효 → 쌍방 모두 전자계약 또는 수기계약으로 진행